

第19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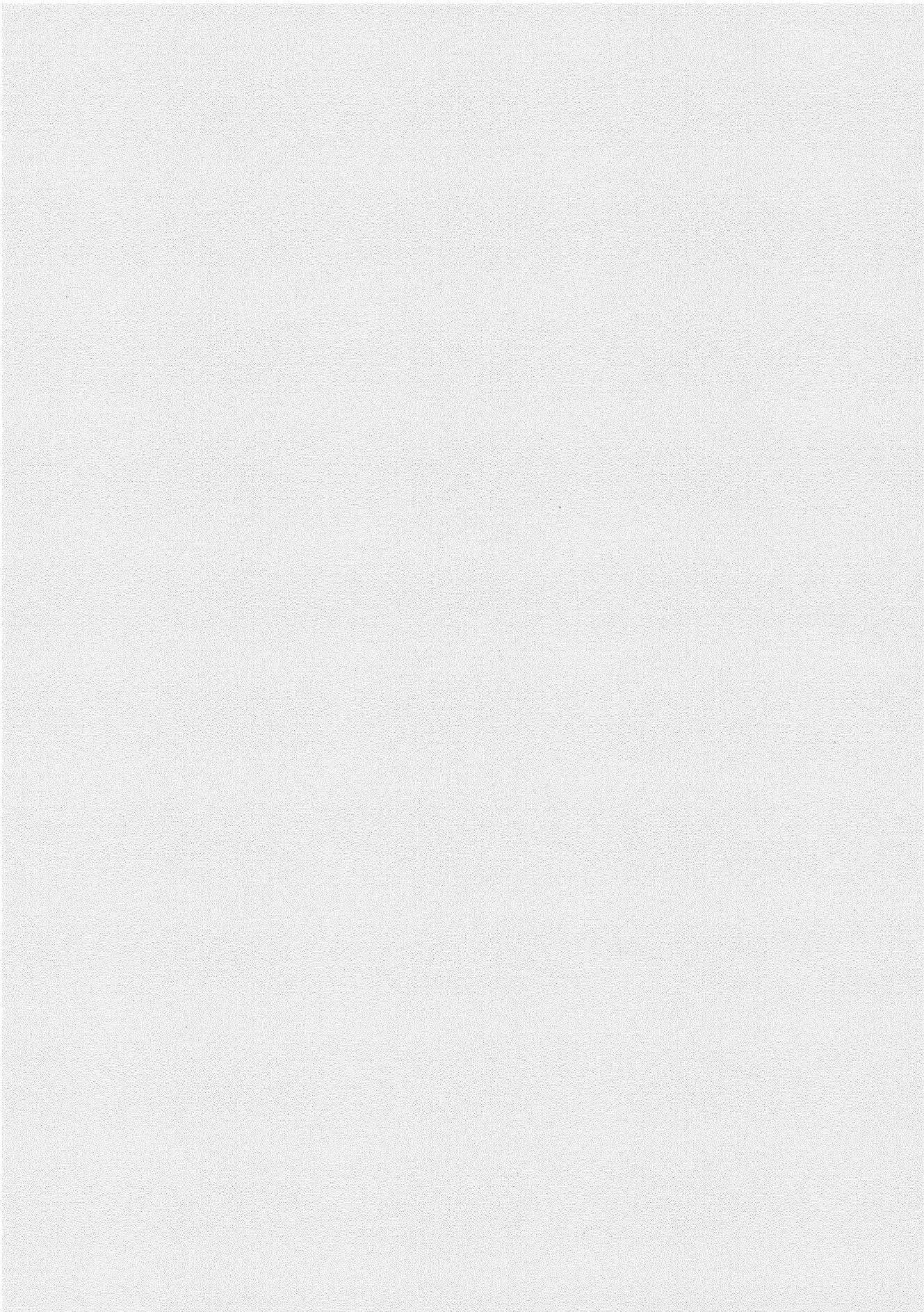
(2006.12.4.~12.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9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111
- II.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13
- III.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119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125
 - 2.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7
 -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7
 -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5
 - 5. 조례심사보고서 15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9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명법 부교육

감께서는 동원산업의 충주고등학교 기자재 기증식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의안접수 사항,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6년 11월 24일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2006년 1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안에 추가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용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9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3분)

●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산회 후 오후에는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
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
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
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은 같은 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
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
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
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
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
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순세계잉
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며
구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운용하
고 충청북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심의위원
회에서 심의하며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
금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
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8회-제1차 본회의]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의 명칭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

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995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59명으로 변경하며 한시정원 3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0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
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 건의 조례
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12월 5일 제2차 본회
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
부용 위원님과 박노성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
다.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제198회-제1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박노성.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4)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12월 5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참석차, 이재신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부웅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부웅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먼저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 과 또는 담당관

을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조 및 제3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995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59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안 제3조의 한시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 의장 성명용

김부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8회-제2차 본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이번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전국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추진해온 우리 도의 감동 생활 지도 시책이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돋보이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 교육위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으뜸 충북교육의 기상을

변함없이 드높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박노성.

0 출석공무원 : 13명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구명희,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6. 12.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김 부 웅 김부웅

위 원 박 노 성 박노성

의사국장 박 경 석 박경석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6. 12. 4.~12. 5.(2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12월 4일(월) 11:00</p> <p>14:00</p>	<p><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p> <p>1.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6. 12. 4. ~ 12. 5. (2일간)</p> <p>2.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p> <p>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p>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p><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p>	<p>제안설명</p> <p>제안설명</p> <p>제안설명</p>
<p>12월 5일(화) 11:00</p>	<p>[제2차 본회의]</p> <p>1.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p> <p>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p><input type="checkbox"/> 폐 회</p>	

(별첨 2)

의안번호	제198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98~1
----------	-------

제출연월일 : 2006. 11. 2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조).
- 나.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안 제3조).
- 다.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충청북도지방교육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4조, 제5조).
- 라.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 (안 제7조).

바. 기금관리·운용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3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교육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2.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3.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도의회에 제출할 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
회의 의결은 시·도의회회의 의결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

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기능) 위원회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이하 “지방교육재정 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별첨 3)

의안번호	제 198 ~ 200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2
----------	-------

제출연월일 : 2006. 11. 2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9552호, 2006.7.1시행)」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로 한다.

제3조중 “담당관”을 “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 </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52호]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제6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지역적 특색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본청에 필요한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 교육청 : 2개 과·담당관
2.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및 도 교육청 : 1개 과·담당관

제7조 (실·국등 기구의 설치) ①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본청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필수기구외의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과·담당관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05.3.31, 2006.2.10>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범위(제7조제1항관련)

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부산광역시교육청		2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경기도교육청		5실·국이내	24과·담당관이내
광역시	인구 : 800만이상 학생 : 16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400만이상 학생 : 8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200만이상 학생 : 4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도	인구 : 600만이상 학생 : 12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300만이상 학생 : 6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150만이상 학생 : 3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 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비 고

1. 실·국 및 과·담당관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 학생수·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4.1.29>

지역교육청기구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구 분	국	과·담당관
인구 50만 이상, 학생 7만 이상	2국 이내	6과·담당관 이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경상남도마산교육청		4과·담당관 이내
기 타		2과·담당관 이내

비 고 : 학생수는 각급학교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말하고, 인구수는 주민등록표상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수를 말하며, 학생수·인구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198-3호
의결 연월일	200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6년 12월 / 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3
----------	-------

제출연월일 : 2006. 12.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2005. 12. 21자로 고시된 2006년 ~ 2007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함(안 제2조)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95명⇒3,059명(증 64명)

나.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안 제3조)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예산조치 : 별첨 1 참조

다. 관련부서간 합의여부 : 해당 없음

라. 입법 예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3,008명”을 “3,072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2,995명”을 “3,059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008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99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u>3,072명</u> </p> <p>1. (현행과 같음)</p> <p>2. <u>3,059명</u></p>
<p>제3조(한시정원)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u>3명으로</u> 하며, 직급별 정원은 <u>교육규칙으로</u> 정한다.</p>	<p>< 삭제 ></p>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8247호)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교육감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또는 7월에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경계변경 또는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수·학급수 및 지역교육청수 등이 유사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을 참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 (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정원의 규정) ①시·도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 2004.1.30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4호)

제3조(표준정원)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교육청별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은 별표 1의 산식에 의하여 정한다.

③영 제14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정원”이라 함은 표준정원에 보정비율 1.03을 곱하여 산출한 정원(이하 “보정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매 2년마다 8월중에 산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 2005.12.21)

구 분	표준정원	보정정원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3,072	3,164	

시·도교육청 정원채정 현황

(2006. 3. 6 현재)

시도 교육청	표준정원 (A)	보정-표준 정원과의 차이(B-A)	보정정원 (B)	책정정원 (C)	책정정원 대비율(%)	
					표준정원 (C/A)	보정정원 (C/B)
서울	7,553	226	7,779	7,553	100.0%	97.1%
부산	3,905	117	4,022	3,905	100.0%	97.1%
대구	2,728	81	2,809	2,728	100.0%	97.1%
인천	3,203	96	3,299	3,203	100.0%	97.1%
광주	1,662	49	1,711	1,711	102.9%	100.0%
대전	1,763	52	1,815	1,763	100.0%	97.1%
울산	1,607	48	1,655	1,607	100.0%	97.1%
경기	12,204	366	12,570	12,204	100.0%	97.1%
강원	3,988	119	4,107	3,988	100.0%	97.1%
충북	3,072	92	3,164	3,008	97.9%	95.1%
충남	4,378	131	4,509	4,378	100.0%	97.1%
전북	4,178	125	4,303	4,178	100.0%	97.1%
전남	5,078	152	5,230	5,121	100.8%	97.9%
경북	5,566	166	5,732	5,566	100.0%	97.1%
경남	5,605	168	5,773	5,605	100.0%	97.1%
제주	1,226	36	1,262	1,230	100.3%	97.5%
합계	67,716	2,024	69,740	67,748	100.0%	97.1%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정원책정 비율 반영)

○ 정원의 총수 : 3,008명 → 3,072(증64명)

- 일반직(32명) : 5급 2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7명

- 기능직(32명) : 7급 2명, 8급 4명, 9급 10명, 10급 16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2,379,984	
인건비	1,911,606	
- 기본급	145,177	< 2006년도 예산편성 단가 기준 > ○ 일반직 - 5급(2명) 23호봉 기준 - 6급(9명) 23호봉 기준 - 7급(14명) 12호봉 기준 - 8급(7명) 5호봉 기준 ○ 기능직 - 7급(2명) 30호봉 기준 - 8급(4명) 23호봉 기준 - 9급(10명) 14호봉 기준 - 10급(16명) 7호봉 기준
- 수 당	99,840	
- 정액급식비	95,640	
- 교통보조비	119,312	
- 명절휴가비	198,854	
- 가계지원비	59,656	
- 연가보상비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물건비	94,32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94,32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전경비	374,058	
- 성과상여금	79,541	
- 연금부담금	244,713	
- 국민건강보험금	49,804	
- 연금지급금		

(별첨 5)

제198회 임시회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 12.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12월 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12월 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지방자치법」 제133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조).
-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안 제3조).
-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4조, 제5조).
-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에 기획관리국장, 기금출납원에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을 회계공무원으로 지정함(안 제7조).
- 기금관리·운용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부칙 제3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에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3조에 기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 안 제4조, 제5조에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는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였고,
- 안 제7조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22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12월 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12월 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52호, 2006. 7. 1 시행)」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여유기구와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조, 제3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본청에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제3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12월 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12월 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2005. 12.21자로 고시된 2006~2007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과-2206)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 정규직제화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함 (안 제2조)
 -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변동없음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2,995명 → 3,059명(증 64명)
-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12. 21자로 고시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95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59명으로 변경하는 것임.
- 또한, 한시기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안 제3조의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12. 5.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부웅

간사

박노성

위원

곽정수

김병우

서수웅

이상일

第19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67

II. 부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189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김부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김부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4시 03분)

● 위원장 김부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박노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성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노성

위원장을 도와서 간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4분)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장이 제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해서 충청북도교
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
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
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데 본 의사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4.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

(14시 05분)

● 위원장 김부웅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
금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

획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정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
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
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
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정립하거나 직접 지
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
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않을 수 있
으며, 조성된 기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
운영하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항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정립하거나 직접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을 해서 이게 남으면 그 다음해로 이월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20%이상이라고 그러면 해마다 그 퍼센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금정립도 매년 달라지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상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가령 500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100억을 정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게 감채운용조례안이 만들어진 데가 있으면 대개 몇 퍼센트 정도로 됐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한 데는 없고 지금 입법예고 마치고서 저희들 마냥 지금 의회에 조례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20%이상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온 규정 예규로 보면 4단계 유형을 두어 가지고 1단계, 2단계는 20%이상이고 3단계는 30%이상 부채가 많은 데는 50%이상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 저희들이 정한 것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저희들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 20%이상이면 최하 20%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다 이 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별도 계좌를 설치하면 금고는 어디다가 교육금고에 같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율이 높은 데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에는 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데 별도 계좌는 교육금고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자금 운용에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도 교육금고가 계약된 주거래 은행하고 우리 별도 기금도 같은 계정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 운영으로 생각되어서 교육금고 지정으로 그렇게 같이 통일을 지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서 그런데 시중 은행하고 또 우리 교육금고하고 금리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하고 비교해서 한번 기금운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일반회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감채기금 설치조례 준칙이 내려왔는데 거기도 보면

별도 계정관리의 저기는 자치단체 금고로 한다고 그렇게 아주 준칙에 일반회계에는 준칙에 아주 그걸 박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준칙에 그게 없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는 교육금고 은행으로 통일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기금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낫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안에 교육금고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잘 몰라서 한번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그래서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정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부채규모를 감축한다는 의미를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례안의 내용이 여기 보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인데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인지 감채기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굴한 용

어인지 한번 안내를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썼다라고 그러면 감채라는 말보다는 여기 보면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기금 이런 용어로 되는 것이 더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돕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2조에 보면 2조 2항에 교육감은 매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52조에 관한 안내가 여기 전혀 없어서 위원이 이 내용을 심의하는데 52조의 내용이 여기 명기가 되어야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2조의 내용이 여기 안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2조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우선 감채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 시·도에 예규를 내려주면서 감채기금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감채기금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52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52조는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고서 남은 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하는 규정입니다.

● 곽정수 위원

원리금 상환에 우선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규정이 52조 규정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 간사 박노성

박노성 교육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 잠깐만.....

질의마치신 겁니까?

● **곽정수 위원**

예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박노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박노성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부채규모는 12월 1일 현재 얼마나 되며, 순세계잉여금 액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현재 저희들 12월 1일 현재 지방채는 없습니다.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지방채로 97억인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거는 연도 말에 자금사정을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로 차입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 **간사 박노성**

고맙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리고 2006년도 결산 추계상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 보면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 130억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았고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 예산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280억 놓고 그래서 다음 내년도 1회 추경 때 가용재원이 약 250억

정도 하면 130억에 250억 하면 한 380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준칙도 있고 또 법적 근거도 있고 필요도 하기 때문에 하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질의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구조적인 부분,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배우는 의미에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 이제 금년 말에 지방채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이렇게 칭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도 교육청의 이런 지방채, 기채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우리 정부 어떤 재정형편이 현재 여러 가지 경기불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액이 많이 생기고 당초에 교부하기로 했던 금액마저도 제대로 교부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신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컴퓨터교체가 한 5년 주기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수십 억씩 이렇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 또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할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일시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지방채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저도 구조적인 원인이랄까 이유는 교육세결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에 민감한 어떤 품목위주로 교육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그런 불경기 때에는 아무래도 그런데 관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세제를 개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만으로 안되죠.

근데 그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지난번에 2004년도에 개정했던 게 금년말로 시효가 되어 가지고 다시 바꾼다고 그랬고 지금 국회에서 검토된 걸로 아는데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던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상임위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9.4%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회의 안을 보면 20%까지 늘리는 걸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바로 20%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른 부처에서는 반대가 있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재 개정이 되면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건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재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학교신설이라든가 특히 우리 교육분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특히 유아교육분야라든가 특수교육분야 또 방과후 활동분야 이런 새로운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20%로 오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개선되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세 개편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교육세 중에서 국세분 교육세는 재경위 소관의 교육세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지방세분 교육세는 행자위 소관의 지방세법 개정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구조적으

(14시 24분)

로 이렇게 세계개편이 되고 교육재정이 확충이 된 뒤에야 시·도교육청에 기채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아까 조례명칭에도 감채라고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아쉬움을 근본적으로 느끼면서,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그것을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잉여금을 남겨 가지고 감채기금으로 삼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과·담당관의 설치기준 외에 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여유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본청의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의 명칭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부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보면 한시기구라는 평이 써 있어서 앞으로 무슨 정원이 바뀌는 것 이외에 기구의 존폐에 관한 것은 이걸로 전부 가름할 수 있는 건지 그때마다 또 다시 일부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현재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혁신 복지담당관실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었습니다. 그것을 여유기구하고 동시에 병행하면서 그 명칭은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정할 수 있고, 저희들이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시·도 직제에 보면 저희 충북 같은 기타 시·도에 10개 과 또는 담당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후에는 설치규정이 마련됨으

로 인해서 11개 과 또는 담당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1개 과는 지금 무슨 담당관실이라든가 과가 되든 무슨 우리 나름대로의 도교육청의 복안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현재에 있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가서 향후에 가서 정부의 행정업무방향이라든지 또 정부 국가시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계속 끌고 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직 전체를 다시 재편을 할 지는 아직 개편작업을 마련 못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아니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10개 과를 둘 수 있고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면서 1개 과나 담당관을 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개 과를 내년도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그 실을 지금 두는 거냐 아니면 내년도에 꼭 필요한 무슨 무슨 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조례 개정을 하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현재 11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혁신복지담당관 설치된 것이요 한 시기구로 설치된 것이 조례에 조적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근거규정만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법적인 근거규정 없이 그냥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운영이 됐던 건지?

●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한시기구로 해서 대통령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법사항에서 검토과정에서 대통령령에는 되어 있지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전국적으로 다시 교육부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조례에 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대통령령 지시사항으로 우리 도 교육청 내에 이런 혁신복지담당관실을 그냥 설치 운영을 해왔는데 한시기구로 그걸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법적 기구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렇습니다.

● **곽정수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결국에 혁신복지과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한시기구로 했고 그것이 내년 6월에 끝나면서 그 기구를 합법화하려고 그러니까 여유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명칭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신건환**

명칭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서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혁신복지팀을 한시로 했던 것을 그냥 조례로 해서 정규 직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신건환**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존 정원범위 내에서 배치하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앞만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조례로 만들자

고 그랬는데 그만 그럴 새가 없이 그냥 직제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때 상황은 정규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다만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사항이 당초에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았던 사항이고, 여유기구는 조례에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시기구를 정규 직제화하면서 여유기구로 해서 정규 직제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기구하고 한시기구하고 틀린 게 여유기구는 정규 직제화하는 기구에 포함이 되는 거고 한시기구는 정규 직제화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건 대통령령에 근거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 위원장 김부웅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한시지구인 혁신복지담당관실의 정규직제화 추진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008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72명으로 변경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2,995명에서 64명이 증원된 3,059명으로 변경하며 한시정원 3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부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지금 시·도교육청 정원책정 현황에 보면 2006년 3월 6일 현재 서울이 표준정원 7,553 명 해서 충청북도가 3,072 이렇게

지금 정원이 표준정원이 나와 있는데 표준정원이 어떻게 국가에서 무슨 정원을 정해 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표준정원은 지방표준정원에 의해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총수를 정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드리고 그냥 구두로 설명하기는 이해가 가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식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책정정원 대비율이 충청북도가 타 시·도는 지금 표준정원에 100%고 보정정원이 97%, 100% 이런데 충청북도가 95.1%로 가장 작는데 요것이 97.1%와 95.1%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표준정원 대비를 보실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것은 타 시·도는 작년도 12월 21일날 고시된 표준정원을 다 조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0%가 완료된 거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64명을 뺀 인원을 가지고 정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97.9%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정정원은 정원 외 3%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보정정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시·도교육청의 표준정원이 매년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기만 하는 건지요?

● **총무과장 신건환**

2년 단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조정이 될 때 주는 경우도 있는지요?

● **총무과장 신건환**

현재까지 추세로 봐서 주는 경우는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표준정원이 늘기로 추산이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은 학교수라든가 학급수라든가 또는 지역교육청 규모라든가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수가 준다면 학급수가 준다면 현재까지는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출산이 되면 저출산 때문에 학급수가 줄고 학교가 통폐합되고 하면 정원이 줄어들죠.

● **곽정수 위원**

그러면 표준정원이 줄 때는 퇴직한 인원으로 자연 감소되는 경우에 충원을 안하는 방법으로 정원숫자를 맞추는 그런 계획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곽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당해 연도에 안맞춰질 경우에 그냥 오버된 체로 운영하다 감될 때까지 기다려서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볼 때는 매년 정년퇴직이라든가 퇴직해서 나가는 숫자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인원만큼 정원 줄이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곽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수웅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표준정원이 97%라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었는데 올해 64명을 늘린다는 것은 표준정원에 맞춘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렇습니다.

● 서수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64명을 올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 및 공립학교의 정원 64명을 늘린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느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가 64명이라는 인원을 줄여서 책정했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상정할 때는 전원을 다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사유발생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상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조정이 된 사유입니다.

그 사유는 2007년도 개교되는 신설학교에 소요되는 인원이 37명입니다. 그 다음에 학급수 증감에 따른 인원추가 배치요

인이 27명해서 64명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2007학년도에 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상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때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면 더 궁금한 게 64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 먼저 번 우리가 심의한 것에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정원범위 내에서 다 조정이 된 겁니다.

● 서수웅 위원

64명이 들어간 거예요?

●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현 인원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년에서 가서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추가로 계상해야 됩니다만 그 인원내 대해서는 제가 통상 생각할 때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반영하는데 대개 기준호봉 갖고 작성하기 때문에 신규 그 금액이 크게 총 임금에 크게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작년에 도의회에서 요걸 금년으로 미뤘다는 것 자체가 그때 설

득을 시켜서 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았네요, 그것이 궁금했던 거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부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간사 박노성

박노성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만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늦은 이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종전에 말씀올린 대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견해가 나와서 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괄해서 다 상정해도 인정을 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유발생이 도래되지 않는 사업은 사유발생 시에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런 견해에서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표준정원 고시된 대로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 간사 박노성

그 다음에 비용 소요내역에 보면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약 23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늘 것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본예산에는 현원 대비 정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23억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인건비 소요액도 정원에 대한 기준호봉 단위단가의 대표적인 호봉이 있습니다. 7급은 몇 호봉으로 해서 총 몇 명중에 평균금액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6급이면 6급으로 직급별로 그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시기가 1년 단위로 계산하는데 채용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따른 도식화된 산정기준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느냐 하는 것은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 간사 박노성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비용 관계는 추경에 예산반영을 안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아닙니다.

인건비 소요액은 판단해서 정원이 판단된 다음에 인원을 충원한 다음에 다시 산출소요액을 산정해서 현재 인건비 판단자료에 의해서 보편은 통상 1,2,3월 달까지 집행해 보면 향후 인건비추정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 여부는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간사 박노성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 다만 신설학교하고 2년 동안에 폐교될 학교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비용소요나 책정인원을 이렇게 책정한 건가?

● 총무과장 신건환

그렇습니다.

● 간사 박노성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저도 잘 모르는 걸 여쭙보겠습니다.

그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표준정원은 오버하더라도 추가로 보충해서 쓸 수 있는 가용범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원을 오버해서 쓰더라도 위법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렇게 말하자면 여유를 둔 거라고 보 여지는데 이후에 무슨 총 정원제인가 하는 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총전에는 총 정원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4년부터인가 표준정원제로 바뀌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총 정원제 그건 염두에 안두어도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쓰기 위해서 혹시 경직성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원도 주어지는 표준정원도 다 채우지 않고 자꾸 인력을 줄이면서 나머지 인력들한테 일을 떠맡기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표준정원도 다 못 채운 이유를 자꾸 염려를 하셨던 것 같고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늘고 낭비되는 인원은

없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효율적으로 최대한 가용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보정정원을 둔 이유는 정말로 요긴하게 쓸 인력이 있을 때 굳이 그렇게 총 정원이니 표준정원이니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고 쓸 자원들을 발굴해서 채용해서 쓰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셨듯이 다른 시·도보다는 표준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우리 도에는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을 저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후에 보정정원 여유도 있는 만큼 정말로 필요 인력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다른 시·도 광주나 전남이나 제주나 이런 데에는 오버해서 쓰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심해 봐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보정정원하고 표준정원이 있는데 교육부의 교부금 기준은 표준정원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도가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더 쓴다면 이거는 자체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 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64명을 증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표준정원 100% 다 채워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그러면 그 64명 가지고서 사유 발생된 곳에 적절히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 총무과장 신건환

예

● 위원장 김부웅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설유치원에 기능직 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요번에 그 64명 가지고서

● 총무과장 신건환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하여튼 사유 발생할 때에 보정자원을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번에 한번.....

● 총무과장 신건환

제안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4명중에 37명은 2007학년도에 개교되는 신설학

교 10개교에 대한 인원이 그대로 들어갈
를 선포합니다.
니다. 그리고 나머지 27명이 학급수 증감
감사합니다.
에 따른 소요인원이 되겠습니다.

(16시 47분 산회)

● 위원장 김부웅

그래서 지금 단설유치원이 많지 않은데
상징적으로라도 한 두 사람 배치해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부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
방교육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
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
의에 성실히 답변에 해 주신 집행기관 관
계관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

[제198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부웅, 간사 박노성,

위 원 곽정수, 김병우,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6. 12. .

위원장

김부웅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9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6.12. 4. (월) 14:00	<p>[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원장 선출의 건2. 간사 선출의 건3. 의사일정 결정의 건4.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